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서욱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범위 확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정원 증원, 희생자 유해 조사·발굴 및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886호, 2021. 1. 5. 공포, 2021. 2. 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진상규명 범위 확대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직제 개편(안 제2조부터 제8조, 안 제3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1)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군·경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등이 법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에 추가되어 위원회의 진상규명 대상이 확대되었고, 법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개정으로 위원회의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하고, 국가기관등의 파견인원 1명을 증원하며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부서간 기능을 조정함

나. 위원회 조사관의 인사관리 기준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위원회 소속 직원의 임용, 복무 등 인사관리를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 채용에 필요한 근무상한연령 적용 예외 등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50명”을 “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명”을 “4명”으로, “기록연구사”를 “사서주사·기록연구사”로, “1명”을 “2명”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인사관리)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임용, 복무 등 인사관리는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조사2과, 조사3과 및 조사4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을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며,”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위원회 소관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진상규명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및 상호협력

3. 관계 부처 등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38조에 따른 청문회 관련 업무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정보 공개

제6조제2항제1호 중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3조제1호(성폭력
사건 제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해외자료의
수집”으로 하며, 제10호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의 접수·분류 및 관리

11.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기록관리단 관련 업무 및 위원회 기록물
관리

제7조제2항제1호 중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를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 및 제11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를 “법 제3조제2호, 제8호,
제9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조사4과) ① 조사4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4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3조제1호(성폭력사건에 한정), 제3호, 제4호 및 제10호에 해당

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
출·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별표 1 중 총계 “52”를 “72”로 하고, 별정직 계 “34”를 “53”으로 하며, 4
급 상당 별정직 “3”을 “5”로 하고, 5급 상당 별정직 및 6급 상당 별정직
“11”을 각각 “17”로 하며, 7급 상당 별정직 “8”을 “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3”을 “14”로 하며, 행정주사, 사서주사, 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
사 “5”를 “6”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u>50명</u> 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 ----- ----- ----- ----- ----- ----- <u>70명</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2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기획재정부,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국방부, <u>3명</u>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③ ----- ----- ----- ----- ----- <u>4명</u> ----- ----- <u>사서주사·기록연구사</u> ----- ----- <u>2명</u> ----- ----- ----- ----- -----

방송통신위원회, 2명(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 ----- -----.
<신설>	제2조의2(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인사관리)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임용, 복무 등 인사관리는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u>조사2과</u> 및 <u>조사3과</u> 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 ----- ----- ----- <u>조사2과</u> , <u>조사3과</u> 및 <u>조사4과</u>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며, ----- -----.
<신설>	제3조의2(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위원회 소관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진상규명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및 상호협력
	3. 관계 부처 등 정책보좌업무

제4조(대외협력담당관) ① (생략)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 3. (생략) 4. <u>5·18민주화운동 관련 해외 자료 수집</u> 5. ~ 7. (생략) 제5조(조사지원과) ① (생략) ② 조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u>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외의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u> 6. ~ 11. (생략) 제6조(조사1과) ① (생략) ②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업무 총괄 2. ~ 7. (생략) 8. <u>법 제38조에 따른 청문회 관련 업무</u> 9. (생략)	<u>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u> 제4조(대외협력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38조에 따른 청문회 관련 업무</u> 5. ~ 7. (현행과 같음) 제5조(조사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u>행정정보 공개</u> 6. ~ 11. (현행과 같음) 제6조(조사1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u>법 제3조제1호(성폭력사건 제외)</u>----- ----- 2. ~ 7. (현행과 같음) 8. <u>5·18민주화운동 관련 해외 자료 수집</u> 9.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u><신 설></u> 제7조(조사2과) ① (생략) ②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u>의 규정에 해당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 7. (생략) 제8조(조사3과) ① (생략) ②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u>에 해당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업무 총괄 2. ~ 7. (생략) <u><신 설></u>	<u>10. 법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의 접수·분류 및 관리</u> <u>11.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기록관리단 관련 업무 및 위원회 기록물 관리</u> 제7조(조사2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u>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 및 제11호</u>----- ----- 2. ~ 7. (현행과 같음) 제8조(조사3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u>법 제3조제2호, 제8호, 제9호 및 제12호</u>----- ----- 2. ~ 7. (현행과 같음) <u>제8조의2(조사4과) ① 조사4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u>② 조사4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 1. <u>법 제3조제1호(성폭력사건에 한정), 제3호, 제4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5·18민주화운동</u>
---	---

	<u>진상규명 업무 총괄</u> <u>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u> <u>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u> <u>한 자료제출·출석요구 및 진</u> <u>술청취</u> <u>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u> <u>등에 대한 사실 조사</u> <u>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u> <u>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u> <u>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u> <u>등에 대한 실지조사</u> <u>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u> <u>결과보고서 작성</u> <u>7.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u> <u>된 조사</u>
부 칙	부 칙
이 영은 2018년 8월 14일부터 시 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52	72	+20
	.		.	.	
	.		.	.	
별정직 계			34	53	+19
	.		.	.	
4급 상당 별정직			3	5	+2
5급 상당 별정직			11	17	+6
6급 상당 별정직			11	17	+6
7급 상당 별정직			8	13	+5
일반직 계			13	14	+1
	.		.	.	
	.		.	.	
행정주사,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5	<삭 제>	-5
행정주사,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사서주사, 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신 설>	6	+6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지원과	
연 락 처	(02) 724 - 9125